

2022년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보건직 공무원 채용 공고

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건직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2. 8. 8.

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

□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인원(총 34명)

※ 채용분야는 1개 기관 1개 분야만 선택해서 지원(중복지원 불가)

- (보건복지부) 총 12명 채용 (7급 2명, 9급 10명)

채용분야	임용예정		선발예정 인원	담당예정직무	근무예정 기관
	직급	직류			
보건의료 (보건)	보건7급	보건	2명	보건의료분야 정책·법령 마련·집행 및 계획·예산 관리 등 보건의료정책 업무	보건복지부 (세종)
병원행정 (보건)	보건9급	보건	8명	국립병원 보건사업계획 수립·관리 및 운영 등 병원행정 업무	국립병원 (전국)
병원행정 (장애구분)	보건9급	보건	1명		
지원센터 (보건)	보건9급	보건	1명	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계획 마련·집행 및 센터 운영 등 지원센터 업무	오송생명과학 단지지원센터 (청주)

- (질병관리청) 총 22명 채용 (7급 2명, 9급 20명)

채용분야	임용예정		선발예정 인원	담당예정직무	근무예정 기관
	직급	직류			
질병관리 (방역)	보건7급	방역	2명	방역행정분야 지침 마련·집행 및 계획· 예산 관리 등 질병관리 업무	질병관리청 및 질병대응센터 (전국)
검역행정 (방역)	보건9급	방역	20명	운송수단 검역, 검역감염병 관리 및 검역구역 방역 등 검역행정 업무	국립검역소 (전국)

□ 응시원서 접수 기간 : 2022. 8. 16.(화) ~ 2022. 8. 18.(목)

※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“2022년도 보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안내서”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첨부>

2022년도 보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안내서

2022. 8.

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

1. 임용예정 직급, 인원 및 담당예정직무

※ 채용분야는 1개 기관 1개 분야만 선택해서 지원(중복지원 불가)

- (보건복지부) 총 12명 채용 (7급 2명, 9급 10명)

채용분야	임용예정		선발예정 인원	담당예정직무	근무예정 기관
	직급	직류			
보건의료 (보건)	보건7급	보건	2명	보건의료분야 정책·법령 마련·집행 및 계획·예산 관리 등 보건의료정책 업무	보건복지부 (세종)
병원행정 (보건)	보건9급	보건	8명	국립병원 보건사업계획 수립·관리 및 운영 등 병원행정 업무	국립병원 (전국)
병원행정 (장애구분)	보건9급	보건	1명		
지원센터 (보건)	보건9급	보건	1명	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계획 마련·집행 및 센터 운영 등 지원센터 업무	오송생명과학 단지지원센터 (청주)

- (질병관리청) 총 22명 채용 (7급 2명, 9급 20명)

채용분야	임용예정		선발예정 인원	담당예정직무	근무예정 기관
	직급	직류			
질병관리 (방역)	보건7급	방역	2명	방역행정분야 지침 마련·집행 및 계획· 예산 관리 등 질병관리 업무	질병관리청 및 질병대응센터 (전국)
검역행정 (방역)	보건9급	방역	20명	운송수단 검역, 검역감염병 관리 및 검역구역 방역 등 검역행정 업무	국립검역소 (전국)

2. 근거 법령

- 「국가공무원법」
- 「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행령」
- 「공무원 임용규칙」
- 「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」

3. 응시 자격

가. 공통 요건

-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,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결격 사유
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- 대한민국 국적소지자(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)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(정년)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, 아래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
 - 가. 7급 : 20세 이상(2002.12.31. 이전 출생자)
 - 나. 9급 : 18세 이상(2004.12.31. 이전 출생자)
- 장애인 구분모집* 응시대상자 :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

* 장애인 구분모집 채용분야 : 병원행정(장애구분)

-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함
-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(직류) 외의 다른 직렬(직류)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
-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

나. 응시자격 요건 :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까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- **직급별 요건** : 응시 직급별로 아래 표의 요건(1~2.) 중 하나는 충족해야 하며, 두 직급 모두 충족하더라도 1개만 선택해서 지원해야 함

7급	9급
1. 대학교 이상의 모집전공분야 해당학과 졸업자* *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는 등 해당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	1. 고등학교 이상의 모집전공분야 해당학과(교) 졸업자
2. 모집전공분야 해당 석사학위 소지자	2. 모집전공분야 해당 석사학위 소지자

- **직류별 모집전공분야 요건** : 응시 직류별로 구분된 아래 표의 모집전공분야에 해당되어야 하며, 복수의 모집전공분야에 해당하더라도 1개만 선택해서 지원해야 함

응시 직류	모집 전공분야	해당학과(전공분야)
보건	석사학위	보건(의료)학, 보건(의료)경제학, 보건(의료)정책학, 보건(의료)행정학, 보건(의료)통계학, 역학, 지역보건학, 의료보장학, 노인보건학, 질병관리학
	보건행정	○ 아래 열거한 과목 중 5개 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학과를 보건행정 모집전공분야의 학과로 인정하되, 응시자 또한 아래 열거한 과목 중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해당됨 - 공중보건학, 보건(의료)행정학, 보건(의료)경제학, 병원행정학(병원경영학, 병원관리학), 보건(의료)관계법규, 건강(의료)보험, 보건(의료)통계학, 보건(의료)정보학, 보건(의료)전산학, 의학용어, 기초의학, 생리학(해부생리학), 병리학
	임상병리	임상병리(학)과
	약 학	약학과, 제약학과
	간 호 학	간호(학)과
	한 약 학	한약학과, 한약자원학과* * 7급 응시는 졸업자 중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 자에 한함

응시 직류	모집 전공분야	해당학과(전공분야)
방역	석사학위	보건(의료)학, 보건(의료)정책학, 보건(의료)행정학, 보건(의료)통계학, 역학, 지역보건학, 질병관리학, 감염학, 미생물학
	방역행정	○ 아래 열거한 과목 중 5개 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학과를 방역행정 모집전공분야의 학과로 인정하되, 응시자 또한 아래 열거한 과목 중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해당됨 - 공중보건학, 보건(의료)행정학, 보건(의료)관계법규, 보건(의료)통계학, 보건(의료)정보학, 보건(의료)전산학, 의학용어, 기초의학, 생리학(해부생리학), 병리학, 생물(미생물)학, (실험)동물학, (보건)역학, 위생학, 감염(관리)학
	임상병리	임상병리(학)과
	약 학	약학과, 제약학과
	간 호 학	간호(학)과
	수 의 학	수의학과
	생 물 학	생물학과, 미생물학과

4. 시험방법

가. 1차 시험 : 필기시험

- 시험과목 : 응시직류 및 채용직급별로 구분(과목당 25문항 객관식)

응시직류	채용직급	필기시험과목
보건	7급	영어, 행정법, 공중보건학, 보건행정학, 보건의료관계법규*
	9급	영어, 행정법총론, 공중보건학, 보건의료관계법규*
방역	7급	영어, 역학, 공중보건학, 보건행정학, 감염의료관계법규**
	9급	영어, 생물학(식물분야 제외), 공중보건학, 감염의료관계법규**

* 보건의료관계법규(6개) : 의료법, 감염병예방법, 검역법, 식품위생법, 국민건강증진법, 약사법

** 감염의료관계법규(6개) : 의료법, 감염병예방법, 검역법, 식품위생법,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, 결핵예방법

- 필기시험 가산특전(세부 내용은 “7.필기시험 가산특전” 참고)
 - 보건의료관련 자격(면허)증 소지자 가산점 가산(5%이내, 직류별 구분 적용)
 - 취업보호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 가산점 가산(10%이내)
 - 의사상자 등의 가산점 가산(5%이내)
 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자(3급 이상) 가산점 가산(2%이내)
- 합격자 결정

-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40퍼센트의 범위(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 1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함)까지 결정
- 취업보호대상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의사상자 등의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도 선발예정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
-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선정

가.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 필요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·중·하로 종합평가
 - * (평정요소)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-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'하'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'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 - *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(상·중·하의 개수)을 집계하여 '중', '하'의 개수와 관계없이 '상'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, '상'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'중'의 개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결정
-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5. 시험일정

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상황에 따라 아래 일정은 연기(조정)될 수 있음

- 필기시험 장소 등 공고 : '22. 09. 08. (목)
- 필기시험 : '22. 09. 17. (토)
-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등 공고 : '22. 10. 05. (수)
※ 보건복지부,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
- 면접시험 : '22. 10. 15. (토)
- 최종합격자 발표 : '22. 10. 28. (금)
※ 보건복지부,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
- 신규자 교육 등 근무 시작 예정시기 : '22. 11월 중

6.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 및 방법

- 접수기간 : '22. 8. 16. (화) ~ 8. 18. (목)
- 접수방법 : 응시분야에 따라 아래 주소 참고하여 등기우편 접수
(등기우표를 부착한 응시표 회신용 봉투 별도 동봉 필요)

채용분야	주소
보건의료 병원행정 지원센터	(3011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(어진동),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인사과 보건직 채용담당자 앞
질병관리 검역행정	(28159)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1동 운영지원과 보건직 채용담당자 앞

-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('22. 08. 18.) 소인분까지 유효함

*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, 봉투 겉면에 채용 분야 및 직급을 꼭 기입하여 주시기 바람

- 등기우편 안에 **등기우표를 부착한 응시표 회신용 봉투**(응시원서 하단 응시표 크기 이상인 봉투면 가능)를 반드시 동봉하여야 함

* 응시표 회신용 봉투에 받는 사람의 주소·성명 및 우편번호 반드시 기재

나. 원서접수 유의사항

- 응시원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hw.go.kr>), 질병관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kdca.go.kr>) 또는 나라일터(<http://gojobs.go.kr>)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람
-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, 응시원서에 연락가능한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

다. 졸업자 추천 방법

-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, 본 시험은 교육감(고등학교 졸업자만 해당) 또는 학교(과)장(전문대학·대학(원) 졸업자만 해당)의 졸업자 추천을 통해서만 응시 가능한 유형의 시험임
- 본 시험에 응시하는 전문대학·대학(원)학과의 학교(과)장은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학교(과)장 직인이 날인된 「보건직 공무원 경력 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추천명부」를 작성하고, 해당자 응시원서 제반 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

- 보건행정 및 방역행정 모집전공분야는 학과의 개설과목 목록*을 추천 명부 뒤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람

- * 보건행정·방역행정 모집분야 관련 과목 중 5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·운영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응시자가 재학했던 기간 중 응시조건을 충족하는 연도의 개설과목을 제출(예: 응시자 입학/졸업 연도 기준 전공교과목)

- 추천명부가 없는 경우의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함

- ※ 고등학교 졸업자 추천은 별도 공문을 통해 각 지역 교육감에게 요청하므로 고등학교 졸업 자격 응시자는 “라. 제출 서류” 중 응시자 추천명부 제출 불필요

라. 제출 서류

구 분	내 용
1. 응시원서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자필로 작성(별지서식 제1호) ○ 7급은 7,000원, 9급은 5,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(전자정부수입인지(행정수수료용) 첨부 권장)를 응시원서 뒷장으로 첨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전자정부수입인지 발급시 성명이 필요한 경우 응시자 성명 기입 *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
2. 졸업증명서(학위증) 원본 또는 사본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모집전공분야 해당 학위 졸업증명서(학위증) 사본 1부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증명서에 전공분야가 표시되어야 함
3. 응시자 추천명부 원본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기 “다. 졸업자 추천 방법” 을 참고하여 제출(별지서식 제2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추천명부가 없을 경우 접수 불가
4. 모집전공분야 학과 개설과목 목록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건행정 또는 방역행정 모집전공분야로 응시하는 경우만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응시자가 재학했던 기간 중 응시조건을 충족하는 연도의 개설과목 제출(예: 응시자 입학/졸업 연도 기준 전공교과목)
5. 모집전공분야 학과 성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건행정, 방역행정 또는 생물학 모집전공분야로 응시하는 경우만 제출
6.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원본 또는 사본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필기시험 가산특전 해당자만 해당되는 증빙서류 사본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자격(면허)증(직류별로 해당 자격(면허)증 상이) 사본 또는 증명서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,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증명서, 의사상자 등의 해당 증명서 등
7. 주민등록초본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u>남성만 제출</u>,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
8.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필 서명 후 제출(별지서식 제3호)
9. 응시표 회신용 봉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등기우표를 부착한 응시표 회신용 빈 봉투(받는 사람의 주소·성명 및 우편번호 기재) 별도 동봉

- ※ 면접시험 대상자 제출서류(자기소개서 등)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함께 공고 예정

7. 필기시험 가산특전(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적용)

가. 자격(면허)증 소지자

- 아래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정한 자격(면허)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(단,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)

- ※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12에 따라 직류별로 가산 자격(면허)증 구분 적용
- ※ 직무분야관련 자격증 중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

< 보건직류 직무분야관련 자격(면허)증 및 가산비율 >

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	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	가산비율	
·기술사 : 산업위생관리, 대기관리, 수질관리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식품, 방사선 관리, 광해방지, 인간공학 ·기사 : 산업위생관리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식품, 광해 방지, 인간공학 ·산업기사 : 산업위생관리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식품 ·기능사 : 식품가공 ·임상심리사 1급 ·임상심리사 2급	·기사 : 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, 수의사, 약사, 한약사,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(특수일반), 방사선취급감독자, 응급구조사1급, 보건교육사1급 ·산업기사 : 임상병리사, 보건의료정보관리사(의무기록사), 방사선사, 간호사, 조산사, 물리치료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, 작업치료사, 위생사, 영양사, 응급구조사2급, 보건교육사2급 ·기능사 : 보건교육사3급	7급	
		5%	3%
		기술사 기능장 기사 임상심리사 1급2급	산업기사
		9급	
		5%	3%
		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임상심리사 1급2급	기능사

< 방역직류 직무분야관련 자격(면허)증 및 가산비율 >

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	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	가산비율	
	·기사 : 의사, 수의사, 약사, 응급구조사 1급 ·산업기사 : 임상병리사, 보건의료정보관리사(의무기록사), 간호사, 위생사, 응급구조사 2급	7급	
		5%	3%
		기사	산업기사
		9급	
		5%	3%
		기사	산업기사

나. 한국사능력검정시험(국사편찬위원회 주관)

※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

<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비율 >

대상별	가산비율	
	2%	1%
등급	1급 및 2급	3급

※ 4급~6급은 가산특전 없음

다. 취업지원 대상자

-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*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는 경우,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(단,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)

* 관련 법령 : 「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

※ 채용분야 중 '병원행정(보건9급)', '검역행정(보건9급)' 모집단위에 해당 (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)

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적용가능한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(보훈상담센터 1577-0606)

< 취업지원 대상별 가산비율 >

대상별	가산비율	
	10%	5%
독립유공자	·애국지사 본인 ·순국선열 유족 ·등록신청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	·애국지사 가족 ·등록신청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·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
국가유공자	·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본인 ·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	·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·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(6급)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

보훈보상대상자	·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본인 ·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	·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
5·18민주유공자	·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·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·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	·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·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(11급)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
고엽제후유의증의 환자	·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	·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·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(중등도 장애)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
특수임무수행자	·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·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·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	·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 ·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(상이등급 6급)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

라. 의사상자 채용시험 특전

- 의사상자 등의 경우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(단,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)

※ 채용분야 중 ‘검역행정(보건9급)’ 모집단위에 해당
(의사상자 등의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)

< 의사상자 등의 가산비율 >

가 산 비 율	
5%	3%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	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

- 단, 의사상자 가점 대상자가 관련 법령*에 따라 취업지원 가점 대상도 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함

* 관련 법령 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

< 필기시험 가산특정 적용 유의사항 >

- ▶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
- ▶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해당 가산율 적용
- ▶ 한국사능력검정시험,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및 자격(면허)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
- ▶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,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
- ▶ 의사상자 가점 대상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도 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적용

8. 기타 참고사항

-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보건복지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.
-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(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·학위·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)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.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30조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(조회),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- 본 시험은 경력경쟁채용이므로 「공무원임용령」 제45조제6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됩니다.
 - 전보제한기간 :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,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
-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◁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▷

인사혁신처 홈페이지(www.mpm.go.kr) - 참여민원 - 신고센터 - 인사신문고 -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

- 최종합격자는 근무기관 결원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배치·임용됩니다.
-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까지 해당 학력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응시분야에 따라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 - (보건의료 및 병원행정 분야) 응시자격 등 공고내용 및 장애인 구분모집 필기 시험 편의제공 관련 문의(044-202-2166), 원서접수 등 관련 문의(044-202-2170)
 - (질병관리 및 검역행정 분야) 응시자격 등 공고내용, 필기시험 편의제공, 원서 접수 등 관련 문의(043-719-7036)

직무기술서(보건의료(보건))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기관
보건복지부	보건복지부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건의료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관리 ○ 보건의료분야 법령·지침 등 제·개정 ○ 보건의료분야 사업 집행 및 성과 평가 ○ 보건의료분야 통계·조사·연구 관리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운영
필요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 ○ (직급별 역량) 상황 인식 및 문제 해결력, 의사소통능력, 관계 구축력, 긍정성 ○ (직렬별 역량)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창의력, 기술적 전문지식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건의료, 건강보험, 건강증진, 보건산업 등 보건의료분야 제도에 대한 지식 ○ 행정법, 의료법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국민건강보험법, 국민건강증진법, 한의약육성법 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관련 지식
응시자격요건	관련분야 : 보건의료(보건) (보건직류 7급)
	학력
추천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시험에 응시하는 학교(과)의 학교(과)장은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학교(과)장 직인이 날인된 「보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추천명부」를 작성하고, 해당자 응시원서 제반 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※ 추천명부가 동봉되지 않은 접수는 불가함

직무기술서(지원센터(보건))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보건복지부	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원 ○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편의 지원 ○ 소속 공무원 등의 급여 및 인사 ○ 소관 자금의 운용 및 회계 관리, 소관 물품·자재·재산의 관리
필요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 ○ (직급별 역량) 상황 인식 및 문제 해결력, 의사소통능력, 관계 구축력, 긍정성 ○ (직렬별 역량)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창의력, 기술적 전문지식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행정법, 의료법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검역법, 식품위생법, 국민건강증진법 및 약사법 관련 지식 ○ 공중보건학, 보건행정학 등 보건의료 관련분야 지식 ○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지식
응시자격요건	관련분야 : 지원센터(보건) (보건직류 9급)
학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보건행정[보건행정분야로 인정되는 학과]을 전공한 보건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모집전공분야의 보건행정분야에 열거된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② 임상병리[임상병리(학)과], 간호[간호(학)과], 약학[약학과,제약학과], 한약학[한약학과,한약자원학과]을 전공한 보건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③ 보건(의료)학, 보건(의료)행정학, 보건(의료)경제학, 보건(의료)정책학, 보건(의료)통계학, 역학, 지역보건학, 의료보장학, 노인보건학, 질병관리학 석사학위 소지자
추천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시험에 응시하는 학교(과)의 학교(과)장은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학교(과)장 직인이 날인된 「보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추천명부」를 작성하고, 해당자 응시원서 제반 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※ 추천명부가 동봉되지 않은 접수는 불가함

직무기술서(병원행정(보건, 장애구분))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	
보건복지부	국립병원	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립병원 보건사업 계획 수립 ○ 국립병원 보건사업 집행 및 성과 평가 ○ 국립병원 진료·조사·연구 지원 ○ 기타 병원행정 업무 	
필요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 ○ (직급별 역량) 과업 이해력, 치밀성, 협조성, 조직 이해 ○ (직렬별 역량)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창의력, 기술적 전문지식 	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중보건학, 생물학 등 보건의료 관련분야 지식 ○ 의료법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검역법, 식품위생법,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, 결핵예방법 관련 지식 	
응시자격요건	관련분야 : 병원행정(보건) (보건직류 9급)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학력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보건행정[보건행정분야로 인정되는 학과]을 전공한 보건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모집전공분야의 보건행정분야에 열거된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② 임상병리[임상병리(학)과], 간호[간호(학)과], 약학[약학과,제약학과], 한약학[한약학과,한약자원학과]을 전공한 보건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③ 보건(의료)학, 보건(의료)행정학, 보건(의료)경제학, 보건(의료)정책학, 보건(의료)통계학, 역학, 지역보건학, 의료보장학, 노인보건학, 질병관리학 석사학위 소지자 </td> </tr> </table>	학력
학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보건행정[보건행정분야로 인정되는 학과]을 전공한 보건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모집전공분야의 보건행정분야에 열거된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② 임상병리[임상병리(학)과], 간호[간호(학)과], 약학[약학과,제약학과], 한약학[한약학과,한약자원학과]을 전공한 보건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③ 보건(의료)학, 보건(의료)행정학, 보건(의료)경제학, 보건(의료)정책학, 보건(의료)통계학, 역학, 지역보건학, 의료보장학, 노인보건학, 질병관리학 석사학위 소지자 	
추천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시험에 응시하는 학교(과)의 학교(과)장은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학교(과)장 직인이 날인된 「보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추천명부」를 작성하고, 해당자 응시원서 제반 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※ 추천명부가 동봉되지 않은 접수는 불가함 	

직무기술서(질병관리(방역))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기관
질병관리청	질병관리청, 질병대응센터
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역행정분야 지침 마련 및 집행 ○ 방역행정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관리 ○ 신종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업무 ○ 감염병 감시, 역학조사, 관리 및 예방 업무
-------------	---

필요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 ○ (직급별 역량) 상황 인식 및 문제 해결력, 의사소통능력, 관계 구축력, 긍정성 ○ (직렬별 역량)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창의력, 기술적 전문지식
-------------	--
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역학, 생물학, 공중보건학 등 보건의료 관련분야 지식 ○ 의료법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검역법, 식품위생법, 결핵예방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관련 지식
-------------	--

관련분야 : 질병관리(방역) (방역직류 7급)	
응시자격요건	학력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방역행정[방역행정분야로 인정되는 학과]을 전공한 대학교 졸업자 (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 등 포함)로서 모집 전공분야의 방역행정분야에 열거된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② 임상병리[임상병리(학)과], 간호[간호(학)과], 약학[약학과,제약학과], 수의학[수의학과], 생물학[생물학과,미생물학과]을 전공한 대학교 졸업자(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 등 포함) ③ 보건(의료)학, 보건(의료)행정학, 보건(의료)정책학, 보건(의료)통계학, 역학, 지역보건학, 질병관리학, 감염학, 미생물학 석사학위 소지자
추천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시험에 응시하는 학교(과)의 학교(과)장은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학교(과)장 직인이 날인된 「보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추천명부」를 작성하고, 해당자 응시원서 제반 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※ 추천명부가 동봉되지 않은 접수는 불가함

직무기술서(검역행정(방역))

임용예정기관명 질병관리청	근무예정기관 국립검역소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송수단 검역 및 위생검사 ○ 검역감염병 관리 및 예방·홍보 ○ 검역구역 방역 및 위기대응 훈련 ○ 기타 검역행정 업무
필요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 ○ (직급별 역량) 과업 이해력, 치밀성, 협조성, 조직 이해 ○ (직렬별 역량)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창의력, 기술적 전문지식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중보건학, 생물학 등 보건의료 관련분야 지식 ○ 의료법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검역법, 식품위생법,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, 결핵예방법 관련 지식
응시자격요건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관련분야 : 검역행정(방역) (방역직류 9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방역행정(방역행정분야로 인정되는 학과)를 전공한 보건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모집전공분야의 방역행정분야에 열거된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② 임상병리[임상병리(학)과], 간호[간호(학)과], 약학[약학과,제약학과], 수의학[수의학과], 생물학[생물학과,미생물학과]을 전공한 보건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③ 보건(의료)학, 보건(의료)행정학, 보건(의료)정책학, 보건(의료)통계학, 역학, 지역보건학, 질병관리학, 감염학, 미생물학 석사학위 소지자
추천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시험에 응시하는 학교(과)의 학교(과)장은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학교(과)장 직인이 날인된 「보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추천명부」를 작성하고, 해당자 응시원서 제반 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※ 추천명부가 동봉되지 않은 접수는 불가함</p>

◎ 응시원서 작성요령 ◎

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

1. ※응시번호 : 기재하지 않음
2. 성명, 주민등록번호 : 정자로 기재하고 오른쪽의 **서명란(서명)에 반드시 서명**
3. 복수국적해당여부, 응시직급, 응시분야 : 해당하는 “□”란에 체크 표시(중복체크불가)
4. 모집전공해당분야 : 해당 모집전공분야의 “□”란에 체크 표시(중복체크불가)하고, 석사학위로 응시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전공명도 기재
5. 학위 : **전문학사 이상**(고등학교 졸업 자격 응시자는 고등학교만 기재)의 **모든 학력(시험위원 제척 용도)** 기재
0000.00.00. ○○대학교(○○대 학원) ○○○○학과 전문학사
7. 주소 : 응시표를 받을 수 있는 곳의 주소와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기재
8. 시험가산특전
 - 자격(면허)증 : 공고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보건전문분야 자격(면허)증을 소지한 경우 그 자격증 명칭을 기재(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,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기재)
 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: 3급 이상 소지자는 해당 급수의 “□”란에 체크 표시(중복체크불가)
 - 취업지원대상자 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, 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,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,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해당 가산비율의 “□”란에 체크 표시(중복체크불가)
 - 의사상자 등 :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용시험 가산특전 대상자는 해당 가산비율의 “□”란에 체크 표시(중복체크불가)
- ※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선택(중복체크불가)
9. 반드시 **학교장 직인(직함도장)** 날인 (단과대학장 또는 학과장 직인 날인도 가능)
 - ※ 직인이 아닌 **개인(성함)도장 등 직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 불가**
10. 응시표 : 생년월일, 성명, 응시직급, 응시직류 및 응시분야 기재
11. 응시표 회신용 봉투에 반드시 등기우표를 부착한 후,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응시원서와 함께 동봉하여 송부
 - ※ 우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우표 부착시 일반우편으로 응시표 회신(수취 불가능시 응시자 본인 책임)

(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)

※ 전자정부수입인지(행정수수료용)의 경우 응시원서 바로 뒷장으로 별도 첨부

12.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정부수입인지(행정수수료용)를 반드시 본인 명의로 구매(인터넷 또는 우체국)하여 원서제출 시 응시원서 뒷장으로 첨부하거나, 우표형식으로 우체국에서 구매시 상기 칸에 붙임
 - *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

주 의 사 항

1.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2. 응시표를 없는 경우 응시할 수 없으며,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(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) 1매를 가지고 시험당일 시험장소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.
3.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고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부착되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책상 위 오른쪽에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, 시험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< 추천명부 작성요령 >

○ 응시분야, 응시계급 및 응시직류

- 아래 분야 중 졸업자가 응시하는 분야 1개의 응시분야, 응시계급 및 응시직류를 기재
- * 분야 1에 응시하는 경우 “보건의료(보건)”, “7급”, “보건” 순으로 기재

구분	분야 1	분야 2	분야 3	분야 4	분야 5	분야 6
분야	보건의료 (보건)	병원행정 (보건)	병원행정 (장애구분)	지원센터 (보건)	질병관리 (방역)	검역행정 (방역)
직급	7급	9급	9급	9급	7급	9급
직류	보건	보건	보건	보건	방역	방역

○ 모집전공분야

- 응시직류별로 구분된 아래 모집전공분야 중, 충족하는 1개를 선택하여 기재
- * 모집전공분야별 해당학과 등 세부 내용은 공고문 본문 참고

보건직류 모집전공분야			방역직류 모집전공분야			
석사학위	보건행정	임상병리	석사학위	방역행정	임상병리	약학
약학	간호학	한약학	간호학	수의학	생물학	

※ 모집전공분야 중 보건행정 및 방역행정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학과 개설과목 목록 (응시자 입학 연도 기준 전공교과목)을 추천명부 붙임으로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

- 양식 제한은 없으며, 보건행정·방역행정 모집분야 관련 과목 중 5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·운영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응시자가 재학했던 기간 중 응시조건을 충족하는 연도의 개설과목을 제출(예: 응시자 입학/졸업 연도 기준 전공교과목)
- * 응시자 또한 위와 관련된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해 추천 가능

○ 성명, 생년월일, 전공학과

- 응시자의 성명, 생년월일(0000.00.00) 및 전공학과명 기재

○ 하단에 반드시 학교장 직인(직함도장) 날인 (단과대학장 또는 학과장 직인 날인도 가능)

* 직함을 알 수 없는 **개인(성함)도장 등은 불가능**

개인정보 제공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

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,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.

- (1)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: 공무원 채용 및 관리
- (2) 개인정보 수집 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학력, 시험가산특전 해당 정보(자격증 등) 및 장애인증명정보 등 채용시험에 관련된 사항
- (3)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
*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
- (4)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2.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(고유식별정보)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- (1)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: 공무원 채용 및 관리
- (2)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: 주민등록번호
- (3)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
*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
- (4) 민감정보의 수집·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3.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(민감정보)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- (1)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: 공무원 채용 및 관리
- (2) 민감정보 수집 항목 : 범죄경력정보,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정보
- (3)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
*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
- (4) 민감정보의 수집·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